

□ 제공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□ 신청방법

- ① 입사지원 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 확인
- ②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- ③ 증빙서류와 편의지원 사항 일치 확인 후 개별 안내

□ 유의사항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시험시간 연장 항목은 장애인 제한경쟁 시험에만 적용됩니다.

-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입사지원서 **접수마감일 (25.7.8.)**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
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- **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**

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※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하는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 - 편의지원 신청 당시 장애정도와 응시예정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의 장애정도가 다를 시에는 편의 지원 제공 내역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□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증빙서류(필기전형)

장애유형(장애정도)	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	비 고
지체장애	상지	중증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확대문제지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기존 1~3급
		경증	• 확대문제지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기존 4~6급
	하지	중증·경증	•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장애인증명서	기존 1~6급
뇌병변장애	중증	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확대문제지 제공	장애인증명서	기존 1~3급
	경증이나,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확대문제지 제공	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	기존 4~6급
	경증		• 확대문제지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
시각장애	중증	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확대문제지 제공	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	기존 1~2급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• 축소문제지 제공(확대독서기 사용자)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	기존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확대문제지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기존 3급 1,2호
	경증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확대문제지 제공 • 축소문제지 제공(확대독서기 사용자)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 *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	기존 4급 2호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	기존 4, 5급 1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확대문제지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	기존 5급 2호
		두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	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	기존 6급
		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• 확대문제지 제공	장애인증명서	기존 6급
	중증·경증		•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기존 2~6급
청각장애					

□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증빙서류(면접전형)

장애유형(장애정도)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	비 고
지체장애	상지	• 전담도우미 지원 • 관련서식 확대 제공	장애인 증명서	-
	하지	• 전담도우미 지원 •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• 관련서식 확대 제공		
뇌병변장애		• 전담도우미 지원 •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• 관련서식 확대 제공	장애인 증명서	-
시각장애		• 전담도우미 지원 • 관련서식 확대 제공	장애인 증명서	-
청각장애		• 전담도우미 지원 • 보조공학기기(보청기 등) 착용 허용 •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	장애인 증명서	-